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 2026. 11. 3.(화) 12:00 **배포** 2026. 11. 3.(화) 10:00

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,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.

-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4,687명에게 21억 원 환급

□ 국세청은 **2021~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**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**더 낸 납세자 4,687명에게 21억 원**(1인당 최대 79만 원)을 **11월 3일(화) 환급**하였다.

○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(「소득세법」 제103조)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**국세청**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**신고내용을 직접 확인**하여 **기본공제 누락분** 250만 원을 **반영한 후 환급**하였다. 참고 1

[환급사례]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 원을 세율 30%로 예정신고하였으나,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**세액 180만 원을 납부함** ▶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한 후 경정감하여 **세액 105만 원**(350만 원 × 30%)**으로 감소** ▶ **79만 원**(환급가산금 **4만 원** 포함) **돌려받음**

□ **주식 양도소득세** 신고는 반기별 **예정신고**(국내주식)와 **확정신고***(국외주식, 양도손익 통산 등)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다.

*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, 국외주식 신고와 국내·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.

○ 따라서, 그동안 국세청은 **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** 등을 통해 납세자의 **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**해 왔다.

○ 그러나,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**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** 확인되었고, 관련 **경정청구**(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) **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**에 따라 **납세자 권익을 보호**하기 위해 **환급을 추진**하였다.

□ **국세환급금통지서**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*되며 **홈택스**(손택스)의 **'환급금 상세조회'**에서 **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**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. 참고 2

* 계좌 지급 대상자는 모바일로,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.

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. **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** 경찰청(☎112), 금융감독원(☎1332), 한국인터넷진흥원(☎118)에 **즉시 신고**하기 바란다.

○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,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**'환급금 상세조회'**에서 **[지급신청]**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**계좌를 입력**하여 신청하면 된다.

○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어려운 경우, **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**을 가지고 **우체국에서 현금**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재출력할 수 있다.

접근 경로	**[홈택스]** → 납부·고지·환급금 → 환급금 상세조회 **[손택스]** →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) → 납부·고지·환급금 → 국세환급 → 환급금 상세조회

□ 앞으로도 **국세청**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**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**을 직접 찾아 **돌려드리는 적극행정**을 펼쳐나가고

○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**신고 시스템을 개선**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**'K-AI 국세행정'**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	책임자	과 장 남아주 (044-204-3471)
		담당자	사무관 문 현 (044-204-348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기본공제 반영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 사례

※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누락하고 다른 주식의 양도차손이나 감면·세액공제가 없는 사례로 기본공제 반영 전후 세액을 비교함

ㅇ 〔환급사례〕 기본공제 반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

- A씨는 2024년 귀속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(보유기간 1년 미만, 세율 30% 적용)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대주주이다. 양도소득금액 600만 원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80만 원을 납부하였다.
- **기본공제 250만 원**을 **반영**하면 양도소득세 **786,110원**을 돌려받는다.

구분	기본공제 미반영	기본공제 반영 후
·①양도소득금액	6,001,449원	6,001,449원
·②기본공제액	-	2,500,000원
·③과세표준(①-②)	6,001,449원	3,501,449원
·④적용 세율	30%	30%
·⑤양도소득세(③×④)	1,800,434원	1,050,434원
·⑥환급금(본세)		750,000원
·⑦국세환급가산금		36,110원
·⑧환급세액(기납부 세액-⑤+⑦)	-	786,110원

* 국세환급가산금 : 750,000원 × 연 3.1% × 567일/365일 = 36,110원

※ 과다 납부한 세액의 납부일 '25.4.11.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 '26.10.30. 경과 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567일('25.4.12.~'26.10.30.)

참고 2 홈택스 환급내역 조회 및 수령 방법

1. 환급내역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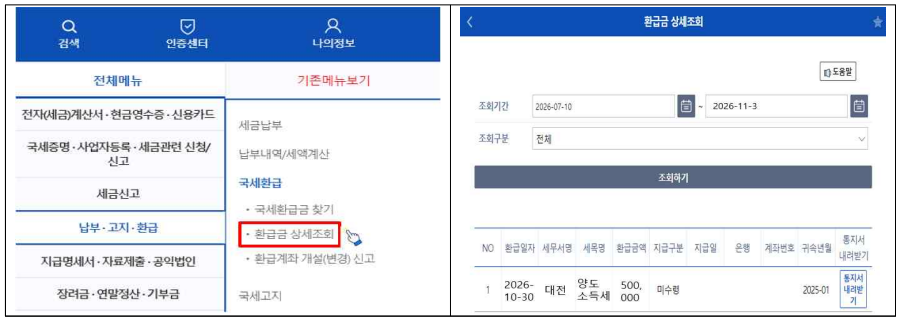
접근 경로
◘ **[홈택스]** → 납부·고지·환급금 → 환급금 상세조회
[손택스] →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) → 납부·고지·환급금 → 국세환급 → 환급금 상세조회

○ **조회기간**과 **조회구분**을 선택하여 **조회**하면 세목, 지급일, 환급금액 등이 표시된다. 이 중 **세목**이 **「양도소득세」**이고, 귀속연도가 **2021~2025년**에 해당하며, **환급결정일자**가 **2026년 10월**인 경우 이번 환급내역이다.

< 홈택스 >



< 손택스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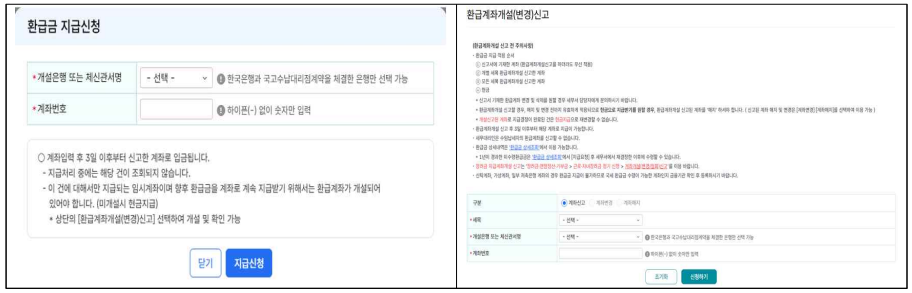
2. 미수령 환급금 수령 방법

○ 계좌 수령

- **신고된 환급계좌**가 있으면 **해당 계좌로 지급**된다. 신고된 계좌가 없다면 **①번의 지급신청**에서 이번 환급금만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. 앞으로도 사용할 환급계좌를 등록하려면 **②번의 환급계좌개설(변경)신고**를 선택한다.



①번(해당 건에 대해서만) **②번(개설 또는 변경)**



※ 계좌등록 시 표시되는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!

○ 현금 수령

- 환급계좌가 없으면 **국세환급금통지서**와 **본인 신분증**을 가지고 **우체국**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.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

참고 3 주식 양도소득세 직권 환급 관련 주요 문답

Q1 주식을 판 사람은 모두 이번 환급 대상인가요?

A 아닙니다. 2021년 ~ 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대상입니다.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반영 후에도 환급세액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2 환급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?

A 아닙니다. 이번 직권 환급 대상자는 **별도의 환급신청 없이** 국세청이 확인한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환급합니다.

Q3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?

A 네. **홈택스(손택스)**에 로그인하여 **'환급금 상세조회'**에서 본인의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Q4 환급계좌가 없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?

A **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**을 가지고 **우체국**에서 **현금**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좌가 없다면 **홈택스(손택스)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**를 **신고**할 수 있습니다.

Q5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돌려받나요?

A 아닙니다. **250만 원**은 세금을 계산할 **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**입니다.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,000만 원이고 세율이 20%인 사례에서는 기본공제 반영으로 환급세액(본세)은 50만 원입니다.

Q 6 환급세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요. 체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 **본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 지급**되어 환급세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또한, **체납액 등이 있으면** 법령에 따라 **환급금이 충당**되어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Q 7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?

A 네. 지방소득세는 **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으며**,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**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**에 **환급금의 10%가 자동 환급**됩니다.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여부와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Q 8 부동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, 주식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?

A 네.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를 **각각 적용**합니다. 같은 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**주식 양도소득금액**에서 **별도로 연 250만 원 한도로 공제**받을 수 있습니다.

Q 9 같은 해 국내·국외주식을 팔면 각각 기본공제를 받나요?

A 아닙니다. 과세대상 **국내·국외주식을 합하여**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. 다른 주식 신고를 확인하여 **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**해야 합니다.

Q 10 사용하지 않은 기본공제액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나요?

A 아닙니다.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며, **남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**. 예를 들어,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공제하고, 남은 50만 원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